

의안번호	제 115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월 일 (제 337 회)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1월 19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
----------	-----

제출연월일 : 2015년 1월 1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 명칭변경 및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 명칭변경(제1조~제12조)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일반재정보전금 → 일반조정교부금
 - 시책추진보전금 → 특별조정교부금
-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변경(제6조)
 - 시·군의 도세징수 실적에 따른 배분을 100분의 40→100분의 30
 - 재정력지수 기준 배분을 100분의 10→100분의 20
-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군수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6조제2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변경함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를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규정된”을 “따라”로 하고 “시·군 상호간의”를 “시·군 간의”로 한다.

제1조, 제3조 조제목 및 본문, 제4조 조제목,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8조 조제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조제목, 제12조 중 “재정보전금”을 각각 “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정교부금”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 도가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조정교부금”이란 조정교부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조정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제4조 제2항 중 “일반재정보전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시

책추진보전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 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해당 시·군의 인구 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낙후지역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지원 사업
5.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군에 알려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분기말 주민등록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은 안전행정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한다.

제8조 제1항 중 “당해 시장·군수가”를 “해당 시장·군수가”로 하고, 제2항 중 “당해사업을”을 “해당 사업을”로 하고, 같은항 “당해 시장·군수에게”를 “해당 시장·군수에게”로 하며, “시책추진보전금”을 각각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통지 받고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군이 둘 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시·군의 <u>재정보전금</u>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도가 당해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재정보전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함은 제6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p>제3조(재정보전금의 종류)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일반재정보전금</u> 2. <u>시책추진보전금</u>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u></p> <p>제1조(목적) ----- ----- 따 라----- <u>조정교부금</u> ----- -----시·군 간의----- -----.</p> <p>제2조(정의) ----- --- 뜻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교부금"이란 -----제1항에 따른 -----해당 - -----. 2. "일반조정교부금"이란 <u>조정교부 금중</u> ----- ----- ----- -----. 3. "특별조정교부금"이란 ----- -- 각 호에 따른 ----- -----. <p>제3조(<u>조정교부금의 종류</u>) <u>조정교부금</u>- ----- 각 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일반조정교부금</u> 2. <u>특별조정교부금</u>

제4조(재정보전금의 재원 등) ①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 2. (생략)

②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 ①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하여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보전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전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당해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에서 당해 시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등) ① 조정교부금-----

-----.

1. ~ 2. (현행과 같음)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 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
-----.

제5조(예산편성) ① -----
----- 조정교부금-----
-----.
----- 조정교부금-----
-----.

② 조정교부금-----

-----.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조정교부금의 -----

----- 해당 -----
-----, 100분의 30에 -----

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 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 해당 -----

---, 100분의 20에 -----

----- 해당 -----
-----.

② 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

-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 2 ~ 5 (생략)

- 1. -----
--- 둘 이상의 시·군이 -----

- 2. ~ 5.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 각호에 의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③ ----- 각 호에 -----
----- 특별조정교부금을 -----

----- . --, -----

-----.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
-----.

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시책 추진보전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의 총액을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재정보전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일반재정보전금은 매분기말 주민등록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재정보전금은 안전행정국장이, 시책추진보전금은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한다

제8조(재정보전금의 시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재정보전금 산정에 필

⑤ ----- 제4항에 따른 -----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할 때에는 -----.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
-----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 해당 시·군에 알려야 한다. ---, -----
-조정교부금의 -----
-----사유로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
---해당 시·군에 알려야 한다.

② -----
----- 일반조정교부금의 -----
-----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일반조정교부금은 -----

----- - 특별조정교부금은 -----.

④ ----- 일반조정교부금은 -----, 특별조정교부금은 -----.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
----- 조정교부금 -----

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 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정보전금을 배 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 해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에 대하여 반환 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6조제5 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미확보 등으로 당해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일부를 반 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재정보전금의 배분계획을 통지 받 고 당해 시·군의 재정보전금 산정기 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 여 그 결과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전금의 반환 또는 감액)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 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

조정교부금

해당 시장·군수가

②

해당 사업

해당 시장·군수에게

특별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따라 조정교부금의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알

려야

제10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제8조에 따라

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재정보전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재정보전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은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2조(의회보고) 도지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

-----해당 -----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
-----.

1. 둘 이상의 -----

----- 조정교부금을 -----
-----.

2. -----하나의 시·군이 둘 이상의 시·군으로 -----

조정교부금은 -----
----- 조정교부금을 -----

----- 조정교부금을 -----.

3. -----

----- 특별조정교부금은 -----
----- 각 호의 -----
-----.

제12조(의회보고) -----
----- 조정교부금 -----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이 우선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금액의 총액을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은 배분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⑤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